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합의 경영상태 실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2조 신설)
- 나. “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3조 신설)
- 다.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6조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 2020. 8.) 예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경영상태 실제조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우려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
2.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조합
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제4조(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시·도지사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행하기 위한 기준과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자금지원의 기준·방법·조건 등) ① 중앙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일시에 지원할 수 있다.

1. 부실조합등을 합병의 방법으로 인수한 조합
2. 부실조합등이 실시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조합
3. 부실조합등이 실시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을 이 전받은 조합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의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는 해당 조합과 연차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금액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3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제2조 관련)

제1장 기본원칙

1. 조합의 부채와 자산의 각 항목별 평가 및 산정방법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이하 “재산평가”라 한다)은 신용사업부문과 일반사업부문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회계별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결합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며, 결합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내부거래는 차감 계상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산림조합 회계규정(예)」, 기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 회계관습 등을 따른다.
4. 관리기관장은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한 재산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평가결과보고서” 양식은 관리기관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평가 및 금액산정 기준

1. 현금 및 예치금

- 가. 현금 및 외국통화는 현금 및 외국통화 시재명세표에 따라 확인한 금액으로 하되, 외국통화는 전신환매도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예치금은 예치기관의 잔액증명서에 따라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대한 예치금은 중앙회의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 다.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예치금(영업 정지된 금융기관 관련 예치금 등)의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반영한다.

2. 유가증권

- 가. 주식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 (1)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평가한다. 시가는 기준일의 종가로 평가하되 평가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바로 전 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 (2)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발행회사의 최근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순자산가액 중 보유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되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해당 발행회사가 부도 등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의개시결정 등으로 회생이 가능하면 "회수의문"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 나. 주식 외의 채권(사채, 국·공채) 및 그 밖의 증권(수익증권 등)의 평

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 (1)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평가한다. 시가는 기준일의 종가로 평가하되 평가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 (2)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되 “자산건전성분류 및 평가기준”에 따라 회수의문 이하(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 및 기타증권의 경우에는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3. 대출금

대출금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각 호를 제외하고는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고 회수예상가액의 산정은 다음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른다.

- 가. 대출약정조항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전이라도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일에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일의 다음 날로부터 연체가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 나. 자립예탁금 대출 등 약정한도가 정해진 대출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라 결산기일(이자납입기일)에 결산이자 원가로 인하여 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음 이자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 다. 구 계좌의 상환을 위하여 개설된 대출(“대환대출”)로서 구 계좌가 대환 전에 1개월 이상 연체이고 상환원금을 초과하여 대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생되지 아니하여도 “고정”으로 분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대환전 대출금의 연체기산일을 적용하여 고정이하(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라. 3개월 이상 연체된 계좌가 정부의 정책에 따른 농가부채경감대출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생되지 아니하여도 “고정”으로 분류한다. 다만, 농가부채경감대출로 전환된 때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차주의 총대출금 중에서 원금 또는 이자가 1회 이상 정상적(3개월 미만 연체 포함)으로 납입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고정이하로 분류된 차주에 대한 대출금 중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총예상손실액 및 대손보전기금잔액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예상보증율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담 보 종 류		산 정 액	비 고
예·적금, 출자금		불입액의 100%	
중앙회 공제		해약환급금의 100%	
유가증권	상장주식 상장채권 수익증권	대용가격의 100% 대용가격의 100% 기준가격의 100%	한국증권거래소 공시
지급보증	은행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정부투자기관보증	보증(보험)금액의 100%	
부동산등	대 지 건 물 아파트 자동차,중기,선박등 기계, 기구류	공시지가의 100% 건물신축단가표의 100% 시가의 70% 최종감정가액을 관련 세법상의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정액 차감 최종감정가액에서 매년 10%씩 차감	국토교통부 공시
기 타		시가의 70%	
경매 진행 중인 담보		최종 법사가	
<유의사항>			
1.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등을 공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또는 조합 자체내규			

에서 담보취득을 제한하는 물건은 회수예상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2. 시가는 매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 자체적으로 산정함 3. 건물신축단가표의 100%는 건물면적×표준단가×(잔여연수/내용연수)를 말하며, 관련세법상의 내용연수 계산 시에는 자동차 등의 구입시점에서 최종 감정일까지의 경과연수를 차감함 4. 비상장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증권업협회 공시)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대용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대용가격의 100% 나. 대용가격이 없으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의 50% 다. 대용가격이 없고 시가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함.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비상장유가증권 중 비상장채권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금융기관 보증부 및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로 할인한 가액의 90% 나. 기타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로 할인한 가액의 70%
--

4. 기타당좌자산(사업미수금 등)

가. 사업미수금, 외상매출금 등은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에서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나. 손실예상액은 다음에 따라 평가한다.

(1) 대출금의 연체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거래처의 계속거래 가능성, 신용도, 담보현황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한 경우에는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자산건전성분류의 연체기산일은 납입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은 거래일, 납입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은 그 납입일의 다음날로 한다.

다. 여신성가지급은 관련 대출금 등의 건전성분류에 따라 동일하게 건

전성을 분류한다.

라. 대출금 미수이자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요주의이하(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금에 대해서는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출금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탁금·적금·공제해약환급금 담보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및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등) 보증부 대출, 대손보전대상정책대출 등 담보물건의 유효담보가액이 관련 대출금의 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범위에서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다.

5. 재고자산

가. 재고자산은 실제부족분과 매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감모손실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나. 순실현가능금액이 장부가액에서 감모손실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금액으로 평가한다.

6. 투자자산

가.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은 재무상태표상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저축성보험료는 잔액증명서에 따라 납입한 원금과 보험회사가 배당한 금액의 합산금액으로 평가한다.

다. 골프, 콘도, 체육시설회원권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인하여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 감정가격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보증금 중 전신전화가입권은 100% 인정하여 평가하며, 임차보증금

중 임대차 계약상 하자가 있거나 채권보전조치가 미비(소송 중인 임대부동산인 경우 선순위 감안)된 경우에는 손실예상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 평가한다.

7. 유형자산

가. 유형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다만, 업무용자산 중 매각예정자산과 비업무용자산은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3. 대출금 참조)에 따른 회수예상가액으로 평가한다.

나. 감가상각누계액은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잔존가액 없이 “정액법”으로 산정한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히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한다.

9. 퇴직급여충당금

평가기준일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평가하고, 국민연금전환금 및 퇴직보험예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0. 우발채무

평가기준일 현재 다음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대상금액을 손실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가. 패소경험이 있는 사건

나. 담당자가 패소를 예상하는 사건

다. 변호사가 패소를 예상하는 사건

[별표 2]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제4조 관련)

구분	기 준	내 용
경영 개선 권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조합 -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4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 -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3등급 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 -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법 제4조제1항제1호) - 자기자본의 증대나 부실자산 또는 불용자산의 처분(법 제4조제1항제2호) -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따른 수신액의 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법 제4조제1항제8호) ·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 지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및 신설 제한 · 경비절감 · 이익배당의 제한 ·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 고정자산 투자, 신규사업 진출 및 신규 외부출자의 제한
경영 개선 요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3 미만인 조합 -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 - 인력의 감축 및 점포·조직의 축소(법 제4조제1항제2호) - 임원의 직무정지(법 제4조제1항제4호) - 사업의 일부 정지(법 제4조제1항제5호) - 합병요구(법 제4조제1항제6호)

구분	기 준	내 용
	산림조합중앙회장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5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 -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적기시정조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	- 사업의 일부 양도나 사업의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법 제4조제1항제7호)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법 제4조제1항제8호) • 지사무소의 폐쇄·통합 • 임원의 교체요구 •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 경영개선요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하는 내용
경영 개선 명령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미만인 조합 -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 및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한 조합 -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한 조합 -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적기시정조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	○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 -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소(법 제4조제1항제2호) -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법 제4조제1항제4호) - 사업의 전부 정지(법 제4조제1항제5호) - 합병(법 제4조제1항제6호) - 사업의 전부 양도나 사업의 전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법 제4조제1항제7호)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법 제4조제1항제8호) • 경영개선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 경영개선요구에 해당하는 내용

[별표 3]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기준(제6조 관련)

1. 자료의 보관·관리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열람청구인

가.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등에 한한다.

나. 청구된 자료의 열람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고,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열람청구방법

가. 청구인이 자료열람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주된 사무소에 서면으로 요청한다.

나. 조합은 청구인으로부터 자료열람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자료의 열람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다. 열람결정 통지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열람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자료열람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가. 자료열람 불가 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열람 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장은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 및 확인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열람제외 대상자료

가. 다른 법령에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자료

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열람을 허용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

다. 그 밖에 열람을 허용할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6. 기타

가. 자료의 열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의 교부 등에 따른다.

나. 열람인은 열람한 정보를 청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조합은 자료열람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 략)	<u>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u>
<u><신 설></u>	<u>제2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u> <u>「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u> <u>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u> <u>조제3호가목에 따른 경영상태 실</u> <u>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u> <u>및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u>
<u><신 설></u>	<u>제3조(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법</u> <u>제2조제4호에 따라 기금관리위</u> <u>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할 부실우</u> <u>려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와 같다.</u> <u>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u> <u>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u> <u>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자본</u> <u>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u> <u>2.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u> <u>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u> <u>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u> <u>급 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u> <u>급이 3등급 이상이나 자본적정성</u>

	<u>또는 자산건전성 부분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조합</u> <u>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u>
제2조(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u>산림청장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행하기 위한 기준과 내용은 별표와 같다.</u>	제4조(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u>시·도지사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행하기 위한 기준과 내용은 별표2와 같다.</u>
제3조(자금지원의 기준·방법·조건 등) ① (생략)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의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는 해당 조합과 연차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u>「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금액을 2회</u>	제5조(자금지원의 기준·방법·조건 등) ① (현행 제3조제1항과 같음) ② ----- ----- ----- ----- ----- ----- <u>영 제3조제1항</u>----- ----- ----- -----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u>③ (생 략)</u> <u><신 설></u>	-----. <u>③ (현행 제3조제3항과 같음)</u> <u>제6조(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u> <u>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에</u> <u>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u> <u>보관·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u> <u>준과 절차는 별표3과 같다.</u>
--	---